

○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(징구용)

1. 주요 개정내용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(징구용)</p> <p>주식회사 하나은행 앞</p> <p>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(이하 “약관”이라 합니다)은 주식회사 하나은행(이하 “은행”이라 합니다)과 이용자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(이하 “결제제도”라 합니다)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. 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에 비치하고, 이용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</p> <p>제 10 조 (결제자금 부족 시 결제절차)</p> <p>① <u>같은 날 만기 도래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이 여러 건인 경우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결제순서는 은행이 정한 바를 따릅니다.</u></p> <p>② <u>구매기업이 결제권한을 갖는 서로 다른 수 개의 지급채무가 경합하는 경우 구매기업이 요청하는 순서에 따라 결제하기로 합니다.</u></p> <p>③ (신 설)</p> <p>제 14 조 (손실부담 및 면책)</p> <p>④ <u>은행은 은행의 과실로 접근매체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,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하기로 합니다.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(징구용)</p> <p>주식회사 하나은행 앞</p> <p>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(이하 “약관”이라 합니다)은 주식회사 하나은행(이하 “은행”이라 합니다)과 이용자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(이하 “결제제도”라 합니다)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. 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에 비치하고, 이용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</p> <p>제 10 조 (결제자금 부족 시 결제절차)</p> <p>① <u>같은 날 만기 도래된 외상매출채권이 여러 건인 경우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결제순서는 구매기업과 은행이 체결한 약정에 따릅니다.</u></p> <p>② <u>전항의 약정에 따라 결제순서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구매기업의 동일한 판매기업에 대한 지급채무의 결제순서는 구매기업이 정하는 바를 따릅니다.</u></p> <p>③ <u>전 2 항에 따라 결제순서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판매기업의 동일한 구매기업에 대한 수취채권의 결제순서는 판매기업이 정하는 바를 따릅니다.</u></p> <p>제 14 조 (손실부담 및 면책)</p> <p>④ <u>은행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,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, 이용자의 고의,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분실, 도난 등의 통지 이후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하기로 합니다.</u></p>	<p>금감원 약관개정 권고에 따른 개정</p> <p>문구 수정</p>

2. 개정 시행일: 2016년 11월 30일

3. 기 거래고객에 대한 적용: 개정된 내용은 개정 시행일 이후 신규, 연장, 갱신 등 약정분부터 적용